



내부감사 규정

제정일	2021.10. 1
개정일	
개정차수	차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의 내부감사(이하 “감사” 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모든 부서 및 학과에 적용한다.
- 제 3조 (감사범위 및 감사방법) ① 감사는 회계, 조직, 인력, 학사 기타 모든 업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 제 4조 (감사부서) 본교의 감사부서는 기획처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 5조 (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 및 특정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 감사 등 본교 상황을 감안하여 정기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특정감사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 제 6조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부서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의 목적, 대상, 기간, 범위, 내용 등 감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7조 (감사반의 구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대상 업무와 감사 방법에 관하여 관련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교직원 중에서 감사 주관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감사반장은 감사관 중에서 총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외부전문인을 위촉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규정에 따른 감사 실시(사실관계 조사, 자료 수집, 관련자 면담 등)
 2.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3.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 요청
 4. 기타 감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 8조 (감사계획의 통보) 정기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피감사부서에 감사계획을 실시 1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감사의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 제 9조 (협조) ① 감사관은 피감사부서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증언, 기타 감사에 필요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 (감사관의 의무) 감사관은 공정한 입장에서 감사를 수행해야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감사결과보

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사종료 후 즉시 구술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목적, 감사대상,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결과 주요내용, 개선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감사결과 처리) ① 총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피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시정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제출하며, 감사부서의 장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의 신청) ① 피감사부서의 장은 제12조 제1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내용을 명백히 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내부신고자 보호) ① 내부신고자는 본교의 내부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감사부서장에게 신고한 내부자를 말한다.

② 내부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내부신고 대상자 및 신고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이 아닌 구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장은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 경위 및 취지 등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다.

④ 감사부서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⑤ 내부신고자는 신고한 사실로 인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